전자 팩스 신고 대상 변경 알림

■ 2026. 6. 1.(월)부터 고용변동신고, 구직(D-10) 연수신고 · 연수기관 변경 신고만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.

○ 여권변경 신고 등 ③~⑥건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신고만 가능하며, 팩스 신고시 반려 처리되니 전자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고 명	근거법률 (출입국관리법)	신고기간	변경
①고용변동신고	법 제19조	15일이내	팩스가능
②구직(D-10) 연수신고 또는 연수기관 변경신고	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호	15일이내	팩스가능
③여권번호·발급일자·유효기간 변동신고	법 제35조 제2호	15일이내	팩스불가
④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	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4호	15일이내	팩스불가
⑤방문취업동포 근무처변경신고	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5호	15일이내	팩스불가
⑥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신고 (D-1,D-2,D-4~D-9)	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	15일이내	팩스불가